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

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
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「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의결되었고, 동 법률안에는 가산금과 증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‘납부지연가산세’의 통합배경은 가산세 중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기간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,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‘납부불성실·환급불성실 가산세’와 ‘가산금제도’가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지연이자로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하는 것입니다.

이에 상위법 개정내용을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‘가산금’ 용어를 ‘납부지연가산세’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

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통해 시세 부과·징수 업무 소관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